

5월 1일부터 특허료, 우선심사신청료 인하
- 특허청,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 -

-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중앙행정기관 최초의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되는 오는 5월 1일에 맞추어 고객의 비용부담 완화와 편의 증진을 위해 연차등록료의 누진체계를 일부 하향조정하고 특허우선심사신청시 청구항에 따른 가산료를 폐지하는 한편, 휴대용 특허(등록)증 발급, 수수료 감면 입증절차 및 연차등록료 납부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개정한다.
- 지금까지 연차등록료가 급격한 누진체계로 되어 있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특허권자 등에게 막대한 부담이 되어 왔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특허료의 경우 현행 3년단위로 2배씩 증가하던 연차등록료 누진체계를 일부 완화하여 13년차 이상 기본료를 36만원으로, 10년차 이상 청구항에 따른 가산료를 5만5천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7~9년차의 가산료를 4만3천원에서 4만원으로 인하하며,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경우도 13년차 이상 등록료를 일부 인하한다.

또한 특허 우선심사신청시에도 심사청구시와 같이 청

구항에 따른 가산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이번 개정에서는 이를 폐지하고 정액 16만7천원만 납부함으로써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분할·합병에 따른 출원인변경신고료 및 특허권 등의 이전등록료 인하대상을 「상법」의 규정에 따른 회사에서 모든 법인으로 확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공동으로 특허(실용신안)출원하는 경우 출원료·심사청구료의 50%를 감면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에서는 특허권자 및 출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특허(등록)증의 종류에 휴대가 간편한 수첩형태의 휴대용 특허(등록)증을 추가하고 수수료 감면 입증서류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의 제출을 생략하였으며, 별도의 납부서 제출없이 연차특허(등록)료 납입고지서로 연차특허(등록)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 개정내용은 '06. 7. 1부터 시행)

우선심사제도

- 1) 출원공개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써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는 제도로써, 심사청구순위에 의한 심사원칙에 대한 예외로 특정출원에 대하여는 우선적 심사조기 권리화하여 공공의 이익 및 출원중인 발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개정(안)	비고		
연차등록료 누진체계 일부 하향조정	(별표 1) 특 허 료(제2조제2항제1호관련)	(별표 1) 특 허 료(제2조제2항제1호관련)	특허 연차 등록료		
	특허권설정등록 일부등의 연수	금 액		특허권설정등록 일부등의 연수	금 액
	제1년 내지 제3년	매년 2만7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1만8천원을 가산한 금액		제1년 내지 제3년	매년 2만7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1만8천원을 가산한 금액
	제4년 내지 제6년	매년 6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2만5천원을 가산한 금액		제4년 내지 제6년	매년 6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2만5천원을 가산한 금액
	제7년 내지 제9년	매년 12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4만3천원을 가산한 금액		제7년 내지 제9년	매년 12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4만원을 가산한 금액
	제10년 내지 제12년	매년 24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5만5천원을 가산한 금액		제10년 내지 제12년	매년 24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5만5천원을 가산한 금액
	제3년 내지 제5년	매년 48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6만8천원을 가산한 금액			
	제6년 내지 제8년	매년 96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8만원을 가산한 금액		제3년 내지 제5년	매년 36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5만5천원을 가산한 금액
	제9년 내지 제11년	매년 192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9만5천원을 가산한 금액			
	제22년 내지 제25년	매년 384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12만원을 가산한 금액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연차등록료 누진체계 일부 하향조정	(별표 2) 실용신안등록료(제3조제2항제1호관련)		(별표 2) 실용신안등록료(제3조제2항제1호관련)			
	실용신안권설정등록 일부부터의 연수	금 액	실용신안권설정등록 일부부터의 연수	금 액	실용신안 연차 등록료	
	제1년 내지 제3년	매년 2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5천원을 가산한 금액	제1년 내지 제3년	매년 2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5천원을 가산한 금액		
	제4년 내지 제6년	매년 4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1만원을 가산한 금액	제4년 내지 제6년	매년 4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1만원을 가산한 금액		
	제7년 내지 제9년	매년 8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1만5천원을 가산한 금액	제7년 내지 제9년	매년 8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1만5천원을 가산한 금액		
	제10년 내지 제12년	매년 16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제10년 내지 제12년	매년 16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제13년 내지 제15년	매년 32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2만5천원을 가산한 금액	제13년 내지 제15년	매년 24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별표 3) 디자인등록료(제4조제2항제1호관련)		(별표 3) 디자인등록료(제4조제2항제1호관련)		디자인 연차 등록료	
	디자인권설정등록 일부부터의 연수	금 액	디자인권설정등록 일부부터의 연수	금 액		
		디자인심사등록출원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	디자인심사등록출원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
제1년 내지 제3년	매년 2만5천원	1디자인마다 매년 2만5천원	제1년 내지 제3년	매년 2만5천원		1디자인마다 매년 2만5천원
제4년 내지 제6년	매년 3만5천원	1디자인마다 매년 3만5천원	제4년 내지 제6년	매년 3만5천원		1디자인마다 매년 3만5천원
제7년 내지 제9년	매년 7만원	1디자인마다 매년 7만원	제7년 내지 제9년	매년 7만원		1디자인마다 매년 7만원
제10년 내지 제12년	매년 14만원	1디자인마다 매년 14만원	제10년 내지 제12년	매년 14만원	1디자인마다 매년 14만원	
제13년 내지 제15년	매년 28만원	1디자인마다 매년 28만원	제13년 내지 제15년	매년 21만원	1디자인마다 매년 21만원	
특허우선 심사신청료 체계 조정	• 기본료(135,000원) + 허가산료(32,000원/항)	• 정액제 방식으로 변경(167,000원) ※ 현행 기준으로 청구항이 1항인 경우에 납부할 수수료 수준 (135,000+32,000)으로 신청인의 추가부담이 없음				
출원인변경 신고료 및 특허권 등의 이전등록료 인하대상 확대	• 법인 및 단체의 분할·합병에 따른 출원인변경신고료 및 특허권 등의 이전등록료 인하대상을 「상법」의 규정에 따른 회사로 한정	• 분할·합병에 따른 출원인변경신고료 및 특허권 등의 이전등록료 인하대상을 모든 법인으로 확대 ※ 관리이전등록료 - 특허: 매건 5만3천원 → 1만4천원 - 실용: 매건 4만원 → 1만4천원 - 디자인: 매건 4만원 → 1만4천원 - 상표: 매건 11만3천원 → 1만4천원 ※ 실사권(사용권)·질권의 이전등록료 - 매건 4만3천원 → 1만4천원 ※ 출원인변경신고료 - 매건 1만3천원 → 6천5백원				
후대용 특허 (등록증 추가)	<신설>	• 신청에 의해 교부되는 특허(등록)증의 종류에 후대가 간편한 수집형태의 후대용 특허(등록)증을 추가하고 교부신청료 신설				
수수료 감면 입증절차의 간소화	• 수수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감면 입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 행정정보 공유망을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감면 입증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유공재유족확인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대·중소기업 공동출원· 심사청구시 수수료 감면	<신설>	• 대·중소기업이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를 공동으로 특허(실용신안 포함) 출원 및 심사청구시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 50% 감면		대·중소기업 생태계 강화 방안인 일련		
연차특허 (등록)료 납부절차 간소화	• 연차특허 등록료 납부시 별도의 납부서를 작성·제출하고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 다음 날까지 납부	• 특허청장이 연차특허(등록)료 납입고지시 부여한 납부자번호(지정납부자번호)만으로도 정상납부기간내에 연차특허(등록)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 추가		'06. 7. 1 시행		
직무발명의 근거규정 변경	• 징수규칙상에 직무발명의 근거규정이 특허법으로 규정	• 발명진흥법의 개정으로 특허법에서 규정하던 직무발명 관련규정이 발명진흥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징수규칙상에 직무발명의 근거규정을 발명진흥법으로 변경		발명진흥법 개정시행 단행 '06. 9. 4시행		
PCT 국제출원 관련 우선권 서류 송달료 삭제	• 특허법시행규칙 제106조의6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권 서류의 송달료: 1만원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 WPO와 특허청간의 전자적 서류교환(PT-ED)의 시행으로 서면으로 제출된 우선권 서류도 전자적으로 WPO에 송달됨에 따른 송달료 삭제				

□ 유럽 지재권 News

● WIPO, 소리·향기 상표등록 인정 개정상표법조약 채택

- WIPO는 3월 29일 싱가포르에서 41개국 회원국 동의 하에 소리·향기 상표등록 개정상표법 조약을 채택
- 소리·향기 상표등록 이외에 전자출원 및 저렴하고 보다 간소화된 상표보호 절차를 채택

※ 자료출처 : News.com.au, 2006.3.29

● WIPO, PCT 통계자료 발간

- WIPO는 1978년부터 2004년까지의 PCT출원에 대한 연도별 통계자료 등을 포함한 특허 및 PCT시스템에 대한 주요 통계자료를 공개

※ 자료출처 : <http://www.wipo.int/ipstts/en/statistics/patents/>

● WIPO, 전자상표 갱신등록 서비스 개시

- WIPO는 온라인상으로 상표권 갱신등록을 할 수 있는 전자상표갱신등록("e-renewal") 서비스를 4월 3일자로 개시
- 전자상표갱신등록 서비스를 통해 등록상표를 계속 사용하고자 한다면 존속기간 만료전 6개월내에 해당 웹사이트(<http://www.wipo.int/e-marks>)에서 간단한 절차를 통해 상표권 갱신을 등록
- 전자상표갱신등록 서비스에 대한 세부사항은 WIPO 웹사이트(<http://www.wipo.int/madrid/notices/>) 참고

※ 자료출처 : WIPO, 2006.4.7

● WIPO, 특허법상설위원회 워크프로그램 합의 실패

- 2005년 WIPO총회에서 결정된 SCP 워크프로그램 수립을 위해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여러 회원국들의 각기 다른 입장과 목표를 파악하는데 큰 성과가 있었지만, 워크플랜에 대해서는 합의에 실패
- 회원국들은 SCP 워크프로그램 정립이 아직은 이르다고 결론지었으며 2006년 총회에 본 문제를 상정하기로 합의

※ 자료출처 : ag-IP-news, 2006.4.15

● PCT 체약국 130개국

- 라오스와 온두라스가 각각 3월 14일과 20일에 PCT

가입비준서를 WIPO에 기탁함에 따라 PCT 체약국 수는 130개국이 되었음

- 라오스(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코드:LA))와 온두라스(Honduras(코드:HN))에서의 PCT의 발효일은 각각 2006년 6월 14일과 2006년 6월 20일

※ 자료출처 : WIPO, 2006.4.18

● WIPO, 온라인 데이터베이스(PatentScope) 업그레이드

- 온라인 데이터베이스(PatentScope) 업그레이드로 1978년부터 현재까지 출원된 백만 건이 넘는 PCT출원 무료 검색 가능
- PCT 출원 정보는 키워드검색, 출원인의 성명, 출원일로 검색가능하며 출원 전문을 인쇄 및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명세서, 청구항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며 출원 정보(출원 현황)에 대한 정보도 제공함
- <http://www.wipo.int/PatentScope/참조>

※ 자료출처 : SeedQuest, 2006.4.24

□ 미국 지재권 News

● USPTO, 2005년 미국 내 10대 특허등록 대학 발표

- 캘리포니아대학이 2004년에 이어 2005년에도 가장 많은 특허를 등록하여 12년 연속 1위를 차지하였음

※ 2005년 미국내 10대 특허등록대학

순위	특허등록건수	대학명	2004년 순위	2003년 특허등록건수
1	390	University of California	1	424
2	136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3	132
3	101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2	135
4**	90	Stanford University**	6	75
**	90	University of Texas**	4	101
5	77	University of Wisconsin	8	64
6**	71	John Hopkins University**	5	94
**	71	University of Michigan**	7	67
7	64	University of Florida	13	41
8	57	Columbia University	10	52
9**	43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19	37
**	43	University of Pennsylvania**	24	32
10	41	Cornell University	16	40

* 이 통계는 특허등록건수의 가집계 결과임 ** 이 표시는 동순위를 나타냄

※ 자료출처 : USPTO, 2006.4.6

● 미국, 파키스탄 연방수사국에 지재권집행전담부서 신설 요청

- 미국은 파키스탄 연방수사국(Federal Investigation Agency, FIA)에 지재권보호를 위한 인력확충 및 교육실시와 함께 지재권집행전담부서 신설을 요청

※ 자료출처: Daily Times, 2006.4.18

● USPTO, 특허심사 관련 법령개정 설명회 개최

- USPTO는 2월부터 진행해온 주요 지역순회 법령개정 설명회(town hall meeting)에서 특허심사절차 관련 추진중인 법령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4월 25일 개최한다고 공시

※ 자료출처 : USPTO, 2006.4.18

● 미국, 말레이시아에 지재권 보호 압력

- David Sampson 미 상무부 부장관은 4월 25일 말레이시아에 미국기업의 지재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며 지재권 보호가 양국간 성공적인 자유무역협정 타결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음

※자료출처 : Yahoo News, 2006.4.25

● 중국, 식물변종 출원 세계 4위

- 중국농림부(Minister of Agriculture, MOA)는 4월 21일 중국이 식물변종 출원수로 세계 4위를 기록하였다고 밝혔음
- 2006년 3월말 기준으로 중국은 3,207건의 식물변종의 보호를 위한 출원을 접수하였으며 그 중 114건이 해외에서 출원한 것으로, 약 747건의 식물변종이 중국에서 승인되었다고 농림부는 밝혔음

※ 자료출처 : People's Daily Online, 2006.4.24

● 인도, 특허인력양성위한 지식재산관리기관 설립 추진

- 인도, 특허관리를 담당할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지식재산관리기관(Indian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설립을 추진 중
- 인도정부는 특허정보 관리인력 양성을 목표로 어떻게 인력을 양성할 지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 바이오 테크놀로지, 텔레마틱스와 같은 첨단 기술 분야의 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이 신설될 것으로 전망

※ 자료출처 : Indiatimes.com, 2006.4.23

□ 아시아 지재권 News

● 중국공안, 지재권 위반 침해 대응위해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

- 중국공안(Ministry of Public Security)는 미국, 캐나다, 호주 및 일본의 인터폴 및 수사기관과 지재권 위반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
- 중국공안부, 중국특허청, 정부기관 및 해외 관련 기관은 본 서명을 통해 지재권 위반 범죄자 소환 및 관련 정보 교환에 합의하였으며 국제적으로 조직화된 지재권 범죄를 소탕하기 위한 사법적 지원에도 합의

※ 자료출처 : interfax.com, 2006.4.4

● 루이비통 짝퉁 핸드백 판매 백화점, 배상금 지불

- 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은 4월 17일 620달러의 진품 루이비통 핸드백 위조 상품을 개당 100위안(12달러)에 판매한 중국 차오와이 남성복 백화점에 대해 루이비통에 15만위안(18,500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 자료출처 : People's Daily Online, 2006.4.18

● 필리핀특허청, 상표전자출원시스템(TM Online) 개통

- 필리핀특허청(IP Philippines)은 4월 24일 상표전자출원시스템(TM Online)을 개통한다고 발표
- TM Online은 출원인들이 상표, 서비스 마크, 지리적 표시 및 기타 소유권을 나타내는 마크를 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한 웹기반의 전자출원시스템임

※ 자료출처 : ag-IP-news, 2006.4.24

(특허청(www.kipo.go.kr)에서 인용)